

검 토 보 고 서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양 주 시 의 회
전문위원 김형열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전문위원 김형열 입니다.
-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 142조에서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 예산외의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각종기금에 대하여 운영의 공공성과 지방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2005. 8.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5호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 8조 제2항에 의하여 세입 · 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기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 지방채 조기상환운용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7년말 현재 조성된 기금액은 127억 9,371만원이며 2008년도 조성계획액은 182억 3,924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니다.

-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방채 조기상환운용기금은

- 2001년 12월 3일 조례로 설치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의 20내지 30%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활용 토록 하고 있습니다.

- 2007년까지 68억 7,435만원을 조성하여 48억 9,658만원을 상환한 바 있으며, 2008년도는 전입금 10억원과 예탁금상환과 이자수입으로 20억 6,717만원을 수입금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므로서, 2008년도에는 본기금 잔액이 30억6,717만원이 되겠습니다.

- 지방채에 의한 매년 이자 이율이 3내지 5%정도를 부담하고 있는데, 본 지방채 상환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어지는 이자수익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높은 이율의 지방채 부터 상환하여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단위 :천원

- 총예산액 3,067,178

- 수입 : 시비출연금 1,000,000. 이자수입 89,411
만기예치금회수 1,977,767

- 지출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067,178

□ 노인복지기금은

- 1997년 5월 5일 조례로 설치하여 2007년 까지 11억 6,933만원이 조성 되었으며, 2008년 까지는 12억 1,013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2008년도에는 예탁금 상환, 이자수입으로 12억 4,513만원의 수입으로 노인 그라운드 골프 지원과 경로당 비품, 소모품비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 예치 또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단위:천원

총예산액 1,245,134

○ 수입

- 예탁금 상환금 401,730
- 예탁금 이자수입 46,517
- 예치금 회수 767,603
- 이자수입 29,284

○ 지출

- 그라운드골프지원 24,000
- 경로당 냉·온수기 유지비 및 혈당기등 소모품 구입 11,000
- 예치금 63,264
- 통합관리기금 예탁 1,146,870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 4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기금의 근거조례인 「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는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 합니다

법에서 기금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도록 한 취지는 자치단체 재원을 예산외로 운영하는 사례를 최소화 하려는 취지로 해석 됩니다

따라서 본기금도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 식품진흥기금은

- 2003년 10.19일 「양주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본기금을 설치 하였고, 재원조성은 과징금중 귀속분 100분의 60과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도지사가 교부한 소요경비등에 의하여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2007년까지 1억294만원을 조성하였고, 2008년말 까지 1억 295만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2008년도에는 경기도식품진흥기금 전입금과 예탁금 상환금 과태료 및 범칙금(100분의 60)등을 수입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와 향토.전통음식 발굴 경진대회,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등에 지출하고 그 외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하는 내용의 계획입니다
- 이중 경기도식품진흥기금 전입금은 그용도를 지정하여 내시된 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단위:천원

총예산액 182,106

○ 수입

- 보조금 37,265
- 예탁금 상환금 78,090
- 예탁금 이자수입 3,651
- 예치금회수 24,852
- 예치금 이자수입 248
- 과징금 38,000

○ 지출

- 모범음식점 지원 및 흥보등 고유목적사업 58,950
- 통합기금 예탁금 78,090
- 금융기관 예치금 24,866
- 반환금 등 5,000
- 과징금 귀속 15,200

□ 체육진흥기금은

- 1994년 6월 22일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였으며 2007년까지 17억 8,122만원을 조성하였고 2008년도 까지는 21억 1,078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재원마련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적립금 이자등입니다
- 본기금에서 지원대상 사업은 시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과 체육지도자의 보호와 육성등 체육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는 목적의 기금 입니다

- 2008년도에는 이자수입. 시비출연금. 만기예치금을 수입으로 하여 생활체육지도자육성 경비등으로 5,000만원을 지출하고 잔여분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단위 :천원

총 예산액 2,160,783

○ 수입

- 시비출연금 300,000
- 예탁금 상환금 300,000
- 예탁금 이자수입 64,727
- 만기예치금회수 1,481,228
- 이자수입 14,828

○ 지출

- 생활체육지도자육성 50,000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000,000
- 금융기관 예치금 110,783

□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은

- 2004년 4월 26일 「양주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근거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설치된 기금입니다
- 본기금 조성액을 2007년 까지 1억 5,772만원으로 하고, 2008년도에는 1억 5,212만원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본기금의 대상사업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으로서 2008년도에

는 농기계 임대수입금, 이자수입, 만기예치금을 수입으로 하여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구입비로 지출하고 잔여액은 금융기관 또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계획입니다.

단위:천원

총예산액 252,122

○ 수입

- 농기계임대수입 87,372
- 이자수입 7,021
- 만기예치금 157,729

○ 지출

-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구입 100,000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0,000
- 금융기관 예치금 52,122

□ 재난관리기금은

○ 1996년도 「양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를 근거로 설치하여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 기금과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으로 각각 운영되어 왔으나, 동 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통합되어 동기금도 재난 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기금조성은 (구)재난관리기금은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8,(구)재해대책기금은 1000분의2를 적립하였으나, 재

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 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2007년까지 조성금액은 24억 7,964만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시비출연금 4억 1,000만원과 예치금 상환금과 이자수입을 예방활동 지원사업비등으로 2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27억 1,345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재해예방 응급복구 및 장비임차료와 자재구입등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천원

총예산액 3,000,453

○ 수입

- 출연금 410,000
- 예탁금 상환금 및 이자 2,478,183
- 예치금회수 112,158
- 공공예금 이자수입 112

○ 지출

- 장비 임차료 및 자재구입 150,000
- 재해복구 민간동원인력 급식비 10,000
- 예방활동 지원사업 10,000
- 침수 흔적도 기본조사 설계비등 117,000
- 금융기관 및 통합관리기금 예치. 예탁금 2,713,453

□ 통합관리 기금은

- 2007. 5. 4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각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하며, 자금의 휴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SOC사업등 지역개발 사업 추진과 지방채상환등으로 우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 외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등에도 재원을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금조성계획을 보면 2007년도 말까지 51억 2,507만원을 조성하고, 2008년도 말까지는 88억 8,262만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천원

총 예산액 9,201,348

- 수입
 - 예치금회수 5,125, 071
 - 예수금 3,757,551
 - 이자수입 318,726
- 지출
 - 금융기관 예치금 8,882,622
 - 예수금 원리금 상환 318,726

□ 검토 결과

- 각각의 조례에서 정한 고유의 목적대로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 기금중에 상당액은 고유목적에 쓰임을 유보하고 금융기관등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자금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관리 기금을 설치하여 예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금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특정한 행정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여 자금을 운영 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 기간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한 것은 기금의 설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에 한하여 예산외로 운영하여 소기(所期)의 목적을 달성하려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각기금의 조례중에는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별도의 사유가 없음에도,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조례가 있어서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의 목표 의미가 불분명 하여 질수 있습니다
- 2008년도에 본 기금운용계획에는 고유목적사업으로 5억 3,095만원을 투자하며, 그외에는 각기금에서 금융기관에 총 93억 5,662만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

다

또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각기금으로 부터 여유기금 88억 8,262만을 예탁받아 통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만 할것이 아니라 본래 목적에 따라 활용도를 높여야 할것입니다

- 법에서는 특정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존속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 정한 기한내에 소기의 행정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